

인천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673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24.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16. 선고 2019가소3445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이고 잠을 못 자는 등 생활이 힘들어 인터넷을 검색한 후 피고를 찾아갔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내림 굿을 해야 해결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가 된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6. 6. 15. 신내림 굿을 하였고, 이를 위해 2016. 6.부터 2016.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29,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신내림 굿을 하지 않아도 되는 원고를 기망한 것이거나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1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내림 굿을 위하여 피고에게 2016. 6. 8. 10,000,000원, 2016. 6. 10. 12,000,000원, 2016. 10. 4. 1,000,000원, 2016. 10. 6. 1,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20. 9. 11. “원고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신병’, ‘무병’ 등을 확인하고 피고를 찾아가게 되었고,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한 다음 신내림 굿을 받기로 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평소 ‘악귀가 머리랑 잡고 저를 좌지우지 한다’, ‘조상님(할머니)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굿 비용을 지급한 후 실제로 신내림 굿을 받은 점, 내림굿을 위해 피고는 원고와 광주, 순천, 인왕산 등의 기도터를 다니며 기도를 하였고, 내림굿 당일에는 원고가 무속인 복장을 하고 뛰어 놀면서 신내림 굿이 진행되는 등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금액 중 2,000만 원 이상을 굿을 위한 과정에 사용하여 원고에게 요청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무속인이 원고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갑 제1호증(송금영수증)과 갑 제2호증(원고와 불상의 남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굿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를 기망한 것이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이효인, 판사 소병진